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6. 12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탁운영자 선정시 자부담 사항을 추가하고 재위탁시 위탁횟수를 제한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시 투명성 제고 및 장난감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“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 제13조 중 “재정부담능력”을 “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”으로 하고,
- 제14조제2항 중 “재위탁”을 “3회에 한하여 재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로 수정한다.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13조 중 “재정부담능력”을 “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재위탁”을 “3회에 한하여 재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
신할 때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3조(위탁운영자 선정)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<u>재정부담능력</u>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	제13조(위탁운영자 선정) ----- ----- ----- <u>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</u> ----- ----- -----.
제14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	제14조(위탁계약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,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재위탁</u>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② ----- ----- --- <u>3회에 한하여 재위탁</u> ---.
③ (생략)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
	④ (원안 제3항과 같음)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·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·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대여 자료”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·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.
3. “회원”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구미시 장난감도서관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 다만,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장난감도서관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기능)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영유아 장난감·도서·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
2.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여

3.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

제5조(회원가입)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구미시(이하 이 항에서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자,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(이하 “일반회원”이라 한다) 및 시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(이하 “시설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
2.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
3.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

제8조(연회비)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,000원, 시설회원 50,000원으로 한다.

③ 회원이 이사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.

제9조(연회비 면제)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~3급 등록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5.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
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7. 그 밖에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0조(장난감 등 기증) 시장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.

제11조(위탁운영)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지원)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운영자 선정)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재정부담능력(자부담 10% 이상)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14조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탁운영자의 성명(법인·단체명)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과 업무내용
4.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,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

④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탁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
2.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3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

제16조(위탁금의 환수)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때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 받은 때
3. 관계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

제17조(지도·감독 등)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난감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·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종전의 위·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날부터 산정한다.

[별표]

구미시 장난감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
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	구미시 인동 남길 178 상현빌딩2층 (구평동)
아띠 장난감도서관	구미시 송원동로 11-16 (송정동)